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대 기 환 경 보 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2021. 12. 30. 일부 시행))됨에 따라 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명확화 등(안 제38조)

- 1) 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
- 2) 과징금 부과기준 근거를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함

나. 결함있는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세부기준 마련(안 제49조의2)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각 명령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다.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안 별표15)

- 1)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 2)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변경신고 미이행 및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 3) 자동차 첨가제·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 4)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미이행 및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대하여 위반횟 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과징금 부과대상)”을“(과징금 부과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별표1의3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해서는 2.0, 2종사업장에 대해서는 1.5, 3종사업장에 대해서는 1.0, 4종사업장에 대해서는 0.7, 5종사업장에 대해서는 0.4로 할 것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8항”을 “법 제50조제8항, 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제52조의4제1항 중 “법 제58조의3제1항”을 “법 제58조의5제1항”으로, “법 제58조의4제1항”을 “법 제58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를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로 한다.

제62조의2제3호 중 “법 제58조의5제1항”을 “법 제58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4호의21 중 “법 제74조제3항”을 “법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4조제5항”을 “법 제7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51조제6항 및 제53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의 검토 및 보완 요청

8의2. 법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제66조제1항제8호의6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7 중 “법 제58조제18항”을 “법 제58조제1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8 중 “법 제58조의4제1항”을 “법 제58조의6제1항”으로, “법 제58조의5제1항”을 “법 제58조의7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보목부터 포목까지를 각각 초목부터 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머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더

목 및 러목을 각각 러목 및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 너목을 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8호의2	100	150	200
--	-----------------	-----	-----	-----

별표 15 제2호머목 중 “법 제51조제5항(”를 “법 제51조제5항 또는”으로,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의3”을 “제1항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호 커목 중 “법 제58조의3제1항”을 “법 제58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의4”를 “제1항제1호의5”로 하며,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않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1호의3	500	500	500
--	-----------------	-----	-----	-----

별표 15 제2호에 오목 및 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법 제74조제1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4호의2	100	150	200
조. 법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4호의3	100	150	200

별표 15 비고 중 “퍼목”을 “고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15 제2호 너목·조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30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의2제1항, 제63조제3항제6의2호·제8의2호 및 별표 15 제2호 머목·버목·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별표1의3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해서는 2.0, 2종사업장에 대해서는 1.5, 3종사업장에 대해서는 1.0, 4종사업장에 대해서는 0.7, 5종사업장에 대해서는 0.4로 할 것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① 법 제50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이하 이 조에서 “교체등”이라 한다)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 3. (생략)
- ② ~ ⑥ (생략)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 ②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① 법 제50조제8항, 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7항-----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 -----

-----법 제58조의6제1항-----

- ②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 6. (생략)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운영)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2. (생략)

3.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의 관리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제4호의16부터 제4호의19까지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

1. ~ 6.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운영) -----

-----.

1.·2. (현행과 같음)

3. -----

----- 법 제58조의7제1항 -----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4의20. (생략)

4의21.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

5.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 13.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략)

<신설>

7. ~ 8. (생략)

<신설>

9. (생략)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

-----.

1. ~ 4의20. (현행과 같음)

4의21. 법 제74조제5항-----

5. 법 제74조제7항-----

6. ~ 13.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법 제51조제6항 및 제53조제5항에 따른 결합시정계획의 검토 및 보완 요청

7. ~ 8. (현행과 같음)

8의2. 법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9. (현행과 같음)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

단에 위탁한다.

1. ~ 8의5. (생략)

8의6. 법 제58조제17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 운영

8의7.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8의8.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
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
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5제1
항에 따른 구매·임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

9. ~ 10. (생략)

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
경협회에 위탁한다.

1. (생략)

2. 법 제58조제17항에 따른 전
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

3. (생략)

④·⑤ (생략)

-----.

1. ~ 8의5. (현행과 같음)

8의6. 법 제58조제18항-----

8의7. 법 제58조제19항-----

8의8. 법 제58조의6제1항-----

----- 법 제58조의7제1항

9.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8조제18항-----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879